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3-254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⑦ 참 가 인	
⑧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4. 10. 청구인에게 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⑨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⑩ 이 유	별지 1에 적은 내용과 같다.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3. 11. 27.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별지 1]

이 유

【제2023-254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3. 2. 21.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번지(지목은 ‘답’,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이고,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풍력발전사업성 검토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으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3. 4. 10. “① 이 사건 농지에는 「○○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대시설인 풍황계측기 설치가 불가한 점, ② 이 사건 농지 인근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큰 점(이하 각 ‘이 사건 처분 제1~2사유’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들’이라 한다)”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3. 6.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3. 4. 10. 청구인에게 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1) 이 사건 처분 제1사유에 관하여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풍력 설비’는 ‘전기 생산 설

비’ 이므로, 풍량 관측이 주된 기능인 풍황계측기는 이와 무관한 점, ②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열거하면서 ‘풍력발전설비’는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의 관측시설’과 구분하고 있는바, ‘풍황계측기’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군 도시계획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제1사유는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제2사유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농지는 5,268.6㎡인데, 청구인이 2년간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은 그 중 0.4%인 24㎡에 불과한 점, ② 설치 장소도 농로에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있어 경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③ 풍황계측기의 크기(길이 543mm, 폭 552mm, 높이 540mm), 무게(45kg)에 비추어보면 절·성토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해당 기기는 무인 관측장비로 인근 농지에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일도 거의 없는 점, ④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풍력발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제2사유는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1) 이 사건 처분 제1사유에 관하여

풍황계측기는 풍력자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설물 또는 기기로 농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풍력발전설비의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제2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을 불이익보다 농업진흥구역인 이 사건 농지를 보전하여 얻을 공익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 법령

가.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제37조 제2항 제4호

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제58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나목,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2023. 8.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2] 제2호 가목, 제4호

라. 구 「○○군 도시계획 조례」(2023. 4. 13. 전라남도○○군조례 제○○○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나목,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5. 판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3. 2.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 (기타 생략)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	소재지	○○군 ○○읍 ○○리 ○○○○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5,268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24㎡				
사용기간	2023. 1. 2.부터 2025. 1. 1.까지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풍력발전사업성 검토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2) 피청구인은 2023. 4.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풍황계측기는 풍력자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설물 또는 기기로서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풍력발전설비의 부대시설에 준하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풍황계측기 설치의 주(主)목적 사업은 풍력발전사업이고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풍력발전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주(主)목적 사업은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풍력발전설비의 부대시설에 준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풍황계측기 설치의 경우 「○○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3 제1항 제4호에 저촉됩니다. 이에 따라 풍황계측기의 주목적 사업인 풍력발전사업은 농지에서 설치할 수 없는 사업에 해당되며 그 부대시설에 준하는 풍황계측기 설치의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비록 24㎡ 소규모 설치면적이지만 해당 농지를 포함한 이 지역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의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3) 청구인은 2023. 6.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다.

2) 판단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농지를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용도 등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시장·군수는 위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나) 이 사건 처분 제1사유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제1사유는 위법·부당하다.

①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은 ‘풍력발전사업성 검토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이므로 그 주목적 사업은 ‘풍력발전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②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 2] 풍력자원 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제2호 가목은 ““풍력자원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또는 기기가 부착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호는 “365일(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음) 이상의 계측자료를 취득해야 하며, 이 때 계측자료의 가용성은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풍황을 계측하고,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그 1년 이상 계측 데이터를 해당 허가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풍황계측기는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즉 풍력발전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주목적 사업이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농지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23년 농지업무편람」 제370면). 이 사건 농지의 용도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풍력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풍력발전시설’의 ‘시설(施設)’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도구·기계·장치 등을 배운 설비이고, ‘설비(設備)’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에 필요한 기계·기구·건물 등을 갖춘 시설이어서 시설과 설비의 의미는 서로 비슷하다(광주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구합13155 판결 참조).

⑤ 위 ①, ②, ③, ④를 종합하면 농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⑥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이를 근거로 주된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제1사유의 근거로 삼은 구「○○군 도시계획 조례」(2023. 4. 13. 전라남도○○군조례 제2703호로 일부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0조의3 제1항 제4호의 상위 근거 법령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개발행위불허가 사유를 들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불허가 논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있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는 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지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 제5호)].

⑦ 또한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풍황계측기의 무게는 45kg, 부피는 0.16185744m³(가로 0.543m × 세로 0.552m × 높이 0.540m), 수평투영면적은 0.299736m²(가로 0.543m × 세로 0.552m)로, 이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나목,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2호 나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⑧ 위 ⑥, ⑦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없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이 사건 조례」 제20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불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제2사유의 위법·부당 여부

① 앞서 살펴본 풍황계측기의 크기, 부피, 수평투영면적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청 면적(24m²)을 고려하면 이 사건 농지에 풍황계측기가 설치된다고 하여 이 사건 농지 및 인근 농지의 보전가치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당 풍황계측기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설치, 정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에 특별히 진출입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농지 및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제2사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략)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9. (생략)

②~④ (생략)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4. (생략)

②~⑤ (생략)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생략)

⑦ (생략)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생략)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3. (생략)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8. (생략)

③~④ (생략)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물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 (생략)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19. (생략)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생략)

2. 공작물의 설치

가. (생략)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생략)

3.~6. (생략)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④ (생략)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1. (생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마. (생략)	

3. (생략)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
영업무에 관한 고시(2023. 8.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로 일부개정
된 것)】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1. (생략)

2. 이 적용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풍력자원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의 자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또는 기기가 부착된 시설물을 말한
다.

나.~차. (생략)

3. (생략)

4. 365일(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음) 이상의 계측자료를 취득해야하며, 이
때 계측자료의 가용성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풍력(설비용량
30kW 미만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 발전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10. (생략)

【구 ○○군 도시계획 조례(2023. 4. 13. 전라남도○○군조례 제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
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공작물의 설치

가. (생략)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생략)

3.~6. (생략)

제20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
다.

1.~3. (생략)

4.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6. (생략)

②~⑤ (생략)